

- 버리면 쓰레기, 모으면 돈이 되는 -

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& 수거 보상금 제도 안내

품목별 배출 방법

품목	예시	배출방법	비고
영농 폐비닐		흙, 이물질 제거 후 비닐만 분리 배출	영농폐비닐,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· 폐비닐: 130원/kg · 농약병: 16,000원(10kg) · 농약봉지: 36,800원(10kg)
폐농약 용기		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, 봉지류만 분리 배출 (그물망, 마대 이용)	·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져갈 경우 개인, 단체 누구나 보상금 수령 가능 (당해 예산 범위 내 지급) · 한국환경공단 · 축동면 두량로 94 ☎852-3021
비료· 퇴비 포대		포대만 분리 배출 (포대 안 쓰레기X)	분리배출 시 고물상 무상수거
모종판		모종판만 모아 배출	
기타 부직포·차광막·보온덮개 등		부피 줄여 배출	· (원칙) 배출자 비용 부담 배출 종량제 봉투(폐기물 포대) 또는 대형폐기물 (100리터 2천원) ※영농폐기물 수거 사업(무상) (상·하반기)집중수거기간 분리배출 준수할 경우 선착순 집행(예산범위 내)

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**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

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분리배출 구분(예시)

무상처리 품목(*분리배출 필수)			위탁처리 품목
1구역(풋말)	2구역(풋말)	3구역(풋말)	4구역(풋말)
영농 폐비닐	폐농약용기	비료포대 모종판	기타 영농폐기물 (부직포, 차광막, 호수, 보온덮개 등)